

## 建議書에 對한 當局의 見解

지난 4月12일부터 18日사이의 第1回 圖書館週間に 開催된 全國公共圖書館 長會議와 學校圖書館심포지움에서 採擇한 建議事項에 對하여 關係部 長官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回答이 있어 會員에게 알립니다.

### 一. 全國公共圖書館長會議 建議事項

建 議 事 項	答 辯 事 項
<p>1. 圖書館政策의 確立</p> <p>ㄱ. 文敎部機構에 圖書館行政을 擔當하는 圖書館局 또는 圖書館課를 編制하여  주실것.</p> <p>現實的으로 이것이 不可能하면 最少 限度 圖書館係 또는 圖書館學을 履修한 專門職으로서 圖書館擔當 獎學官 또는 司書官을 配置하여  주실것.</p> <p>ㄴ. 市道敎育委員會에는 圖書館課 또는 圖書館係를 設置하고 不然이면 위에 摘記한 專門職을 配置하여  주실것.</p> <p>ㄷ. 市郡敎育廳에 위에 摘記한 專門職을 配置하여  주실것.</p> <p>ㄹ. 國民의 敎育과 文化發展을 爲한 百年大計로서 市, 道別로 市, 道, 郡立 圖書館을 具體的인 年次計劃 밑에 設置普及하여  주실것.</p>	<p>ㄱ. 國家財政形便上 機構의 擴張 或은 定員의 增員은 當分間 不可能함. (文敎部長官)</p> <p>ㄴ. 機構의 新設은 公務員의 增員을 隨伴하는바 現時期로서는 圖書館의 分布 狀況으로 보아 行政機構設置의 必要性이 없을것으로 思料함 (文敎部長官)</p> <p>ㄷ. 各地方實情에 맞는 方法을 講究하겠음 (新規增員은 考慮할 수 없음) (文敎部長官)</p> <p>ㄹ. 貧弱한 現地方財政 狀況을 감안할때 一定한 計劃을 세워 設置 普及하기는  어려운 實情임. (文敎部長官)</p>
<p>2. 公共圖書館의 財政豫算問題.</p> <p>ㄱ. 圖書館財源의 捕捉</p> <p>(1) 先進國의 例를 따라 圖書館稅制度를 採用하되 地方稅法을 改正하여 消防</p>	<p>(1) 圖書館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그 利用者로 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p>

稅와 같은 目的稅로서 圖書館稅를 規定 하여 주실것.

- (2) 地方稅에 目的稅로서 規定되었던 從前的 教育稅 制度를 復活하되 初等教育의 經費로만 用途로 規定치 말고 圖書館 經費로도 使用할수 있도록 考慮하여 주실것.
- (3) 圖書館을 設置 經營하는 地方團體에 대하여 政府補助, 地方團體 負擔等の 比率를 定하여 圖書館의 育成을 促하여 주실것.

#### ㄴ. 圖書館 豫算 編成指針의 示達

每年 豫算編成에 마다 示達되는 豫算 編成 指針書에 圖書館費에 對한 指針을 樹立하여 주심으로써 任意計定에서 오는 豫算의 無軌道性을 止揚하여 주실것.

ㄷ. 一般會計 및 教育費 特別會計의 各 豫算總額에 對한 圖書館費의 比率이 늘렌만치 낮으니 그 比率을 늘려 주실것.

ㄹ. 一般會計에서 教特會計로 圖書館費를 分期別로 轉出함에 있어서 轉出金의 擧期支出을 行하지 않는 弊端이 頻繁하여 圖書館運營의 萎縮 危機等 窮地陷入을 招來하는 事例가 多年間 許多하게 累積되어 왔으니 이를 文教 內務의 兩長官命令으로 止揚하여 주실것.

을 뿐만 아니라 公共圖書館의 設置區域內에 居住한다는 要件만으로 將次 그 圖書館을 利用 할것을 推定하여 目的稅를 課稅한다는것은 收益者 負擔原則에도 違背되는것이므로 圖書館稅를 新設할수 없음 (內務部長官)

- (2) 앞으로 關係法 改定時에 반영되도록 考慮하겠음. (文教部長官)

- (3) 우선 一部圖書館만이라도 政府補助를 받것쯤 豫算面에 반영되도록 努力하겠으나 道費補助, 地方團體 負擔等에 관한것은 地方自體에서 취할 問題이며 地方實情을 無視하고 一定한 比率을 定하여 強力하게 권장할 性質의 것은 못된다고 史料됨 (文教部長官)

ㄴ. 現在 教育費特別會計, 財政形편으로는 圖書館 運營經費를 충당할수 없으며 다만 一般會計로 부터 圖書館의 정상運營費를 전입받아 圖書館運營의 萬全을 기하도록 新年度 豫算編成 指針에 示달하겠음. (文教部長官)

ㄷ. 이는 財政形편에 따라 當該地方 자치단체 자체가 決定하여야 할것임. (內務部長官)

ㄹ. 各市道 教育委員會 教育監으로 하여금 前項 資金을 擧期에 支給받도록 조치할것을 指示하겠으며 當부로서도 內務部 當局에 요청하겠음. (文教部長官)

이에 對하여는 貴協會의 建議를 參酌하여 今後 그러한 事例가 없도록 措置하겠음. (內務部長官)

## 3. 公共圖書館의 廳舍確保 問題

5·16以後 教育自治制 廢止에 따라 市郡立圖書館에서 教育廳 廳舍를 圖書館 廳舍로 轉用하던중 1963年末에 教育自治制가 復活되어 前廳舍로 復歸됨에 따라 圖書館은 廳舍없이 右往左往하게 된 곳이 많습니다. 그 代表的인 例가 大邱市立圖書館의 境遇입니다. 文敎部, 內務部, 地方自治團體等 關係部處長이 緊急히 協議하여 廳舍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公共圖書館의 所屬廳 問題

公共圖書館은 政府組織法, 文敎部職制, 教育法上으로 보아 文敎部의 管掌事項으로서 儼然히 明示되어 있으나 一群의 圖書館은 市·郡에 所屬되어 있는 등 亂脈相을 露呈하고 있으니 教育廳으로의 移管을 주저하고 있는 市·郡에對하여 文敎, 內務, 兩長官의 命令으로서 早速히 移管토록 措置함으로써 一元化된 非合理的인 指導監督體系에서 一元化된 指導體系로 當然히 歸屬되도록 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公共圖書館의 職種 및 定員問題

## ㄱ. 職種問題

公共圖書館이 一群은 教育廳에 一群은 市·郡으로 分屬되어 있는 까닭에 前者는 國家公務員法에 依한 司書職種의 適用을 받는다 하면 後者는 地方公務員法에 依한 職種이 適用되고 있는 矛盾性을 드러내고 있어오니 後者의 移管을 早速히 實現하여 司書職種의 適用을 받을 수 있도록 一元化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ㄴ. 定員問題

公共圖書館의 定員은 말이 안될만치

3. 教育自治制 復活에 따라 教育廳이 圖書館으로 轉用하여오던 前廳舍로 복귀하여 圖書館廳舍가 確保될수 없는 問題는 文化費 전입이 순조롭지 못하여 文化行政에 커다란 차질을 招來하고 있는 現財政實情에 비추어 불예 별도로 圖書館廳舍를 確保하기는 곤란한 일임.

(文敎部長官)

4. 圖書館의 所屬을 一元化하여 教育廳에 歸屬시키는것은 理想的인 일이지만은 하나 文化費의 전입이 순조롭지 못하여 文化事業수행에 支障을 받고있는 現時點에서 모든 圖書館의 所屬을 教育廳에 歸屬시키면 圖書館運營豫算의 確保가 어려울것임으로 당분간 現狀態로 두고 전입금 問題가 순조로울때 차츰 教育廳 所屬으로 一元化시키는것이 오히려 圖書館運營을 위하여 도움이 되리라 思料됨.

(文敎部長官)

ㄱ. 본항은 第3項의 問題가 決定되면 자연 解決될 問題임.

(文敎部長官)

ㄴ. 公務員의 增員은 豫策이 隨伴되어야 하니 各機關에서 豫算을 確保한후 그 明細書를 添付여 增員要求 하도록 極히 적은 數字이고 大部分 臨時職員

으로서 充當하여 이미 多年間에 이르고 있어오니 彌縫的인 臨時職制度를 止揚하고 正規의 定員으로 代置하여 주시는 同時에 人力不足으로 危機에서 허덕이고 있어오니 定員의 增員問題를 深刻하게 呼訴하는 바입니다.

ㄷ. 館長의 地位와 轉勤制의 採用

館長의 地位는 적어도 市立은 市의 課長級 郡立은 郡의 課長級으로 待遇하여 주시되 館長은 原則的으로 圖書館學을 履修한 專門職으로 補任할 것이며 國家公務員으로 任命하여 國公立圖書館 相互間에 人事交流制度가 實現될수 있도록 鈞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ㄹ. 司書職의 別定職 待遇問題

圖書館의 業務가 高度의 專門性과 學術性을 띤 特殊業務일뿐만 아니라 復雜多岐한 技術的인 特殊業務인 만치 外國의 例와 같이 圖書館의 專門職인 司書職을 別定職으로서 待遇할것을 建議하는 바입니다.

ㄱ. 時間外 勤務手當의 支給

圖書館은 一種의 現業機關의 性格을 띄고 있어 開館時間이 最低 8時間에서 最高 17時間까지이며 平均 12時間의 開館을 하고 있는바 이에 從事하는 圖書館직원은 時間外 근무 手當을 支給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ㄴ. 閱覽料 徵收制度의 撤廢

오늘날 公共圖書館에서 利用者로부터 閱覽料를 받고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는 實情이오니 以後進的인 羞恥를 拂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ㄷ. 私立圖書館 設置의 勸獎

하시기 바랍니다.

(文敎部長官)

機構擴大와 公務員의 增員은 現實情下에서는 不可能하므로 以後 機會있을때 參考하겠음. (총무처長官)

ㄷ. 公務員 任用令 第13條및 第15條

에 規定된 人事管理의 趣旨에 따라 適材適所의 人事配置와 機關 相互間의 人事交流를 實施하고 있으나 圖書館의 規模에 따라 館長의 職級을 調停하고 앞으로 더욱 合理的인 人事管理에 萬全을 期하겠음. (文敎部長官)

ㄹ. 行政이 極도로 發達된 오늘날 모든 行政이 高度의 專門性과 技術性을 要請하고 있으므로 唯獨 司書職만 別定職으로 待遇할수는 없음.

(文敎部長官)

ㄱ. 道협월보 1964年 4月號 page 34 答辯

事項 第8을 參照하시얏. (文敎部長官)

ㄴ. 道협월보 1964年 4月號 page 34 答辯

事項 第7을 參照하시얏.

(文敎部長官)

ㄷ. 圖書館法에 依하여 圖書館設立은

政府는 私立圖書館의 設置 普及을 積極 勸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公共圖書館 弘報活動의 支援  
公報部는 公共圖書館의 弘報活動을 支援하기 爲하여 政府刊行物 弘報用 寫眞, 映畫필름등 資料를 圖書館에 直送 또는 貸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 圖書館法 施行令의 早速 公布.  
政府는 目下 制定中에 있는 圖書館法 施行令을 早速히 制定公布하여 중심으로서 圖書館이 前進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法人이어야 하므로 將次 圖書館을 經營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때에는 各 別한 便宜를 提供할것이나 國家補助 없는 現實情에서 法人의 負擔으로 運營되는 圖書館의 設立을 권장할 方途는 없음. (文敎部長官)

○. 정부간행물의 협조는 당도서실에서 各機關別로 2부 蒐集하여 永久備置保管하고 있으므로 송부할수는 없고 자료수집의 편의와 기한부 貸與는 協助할수 있음. 홍보용사진은 매수제한으로 송부할수 없음. 필름은 지방은 당해도에서 서울은 당관에서 활용시 최대한으로 협조하여 드리겠음.

(中央公報館館長)

스. 도협월보 1964年 4月號 page 33 答 辯事項 第1을 參照하시얏.

(文敎部長官)

## 二. 學校圖書館심포지움 建議事項

建 議 事 項	答 辨 事 項
<p>1. 圖書館法 施行令을 早速히 公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圖書館運營費(圖書費)를 增額해 주시기 바랍니다.</p> <p>3. 教育公務員法 및 同法 報酬規程 改定 要望 教育公務員法 資格基準에 司書教師는 上級職으로 昇進할 수 없고 實技教師와  같은 位置에 있으며 初任號俸이 一般教師와 差異가 있음은 圖書館法 第25條에</p>	<p>1. 道협월보 1964年 4月號 Page 33 答辯 事項 第1을 參照 하시얏.</p> <p>2. 道협월보 4月號 Page 33 답변 第5을 參照 하시얏.</p> <p>3. 司書教師도 一般教師와 同一하게 昇 給할수 있으며 國民學校나 中等學校 나 司書教師의 技能이 同一하여 區別할 必要가 없으며 司書教師 初任號俸은 實 技教師 養護教師보다  높고 中學校 二級 正教師와 同一함으로 司書教師의 待遇</p>

規定된 國民校 以上學校에 義務的으로 設置된 目的達成에 支障이 있을것 같으니 是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4. 文敎部, 市, 道敎育委員會 市, 郡 敎育廳에 圖書館 獎學體系를 確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5. 司書敎師 T. O 配定을 要望합니다.

는 疎忽히 되지 않았음.

4. 現在 各市道敎育廳學務局 初中等敎育課에서 學校圖書館指導에 關한 事務를 擔當하고 있으며 當部로서는 (獎學室所管)으로 學校圖書館 育成을 爲하여 重點的으로 努力하고 있음.
5. 國家財政形便上 專擔敎師의 配置는 期待할 수 없으므로 現職敎師 又是 準敎師中 所定의 司書敎師 講習을 履修케 하여 兼務토록하는 方法을 研究하겠음.

(文敎部長官)

### 三. 圖書館協會에서 文敎部 長官에게 提出한 建議書

#### 建 議 事 項

##### 司書敎師資格認定措置에 關한 建議事項:

위의 일에 대하여 1957年 피바디 敎育使節團이 來韓하여 敎育發展을 支援하고자 延世大學校에 韓國圖書館學講座를 開設하고 文敎部, 延世大學校, 피바디 敎育使節團의 共同主權로 司書敎師課程講習을 다음과 같이 履修시킨바 있습니다.

이들은 多年間의 經驗과 專門敎育履修者로 先進諸國의 司書敎師들과 比較하여도 조금도遜色이 없는 資格者로서 當然히 敎育公務員法 改定時에 經過措置로 資格이 認定 되었어야 할 것이 누락되었으니 다음 事項 參考하시와 司書敎師資格基準 第2項의 資格을 認定하여 學校圖書館을 오늘까지 擔當해온 그들로 하여금 보다 낡은 發展에 全力을 다 하

므로 國家的으로 緊要한 人的 資員確保에 遺憾없도록 格別히 留意있으시기 仰請 하나이다.

記

##### 1. 受講人員

가. 延世大學校(1958年~1963년까지 6年間)

- (1) 受講人員; 132名
- (2) 講習科目; 圖書館學 320時間(18學點)
- (3) 受講者; 現職敎師
- (4) 受講者人選; 文敎部(各道別 2.3名式)

나. 梨花女子大學校(1960年)

- (1) 受講人員; 22名
- (2) 受講科目; 圖書館學 300時間
- (3) 受講者; 現職敎師

(4) 受講者人選; 梨大

合計 154名

## 2. 資格認定措置가 要望되는 理由

가. 이들은 現在까지 全國各地에 散在하여 學校圖書館 育成과 發展에 協力を 繼續하고 있으며 各地方學校圖書館 運營 및 指導의 中心人物들입니다.

나. 司書教師는 一定한 時間의 受講만으로는 機能을 發揮하거나 目的이 達成되지 않으며 數年間 經驗을 土臺로 300時間 以上の 教育을 實施하여 비로서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을 兼備하게 되므로 司書教師 1人을 養成 하는 데는 많은 經費가 隨伴되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實施된 300時間 以上の 講習

에 1人當約 2萬원의 經費가 投入되었 습니다.

다. 이들 司書教師는 文敎部長官이 傳統 있는 大學에 依賴하여 養成한 것으로 마땅히 資格이 認定 되어야 합니다.

現時點에서 이들의 資格을 認定 하지 않으면 司書教師가 한사람도 없는 結果가 되어 圖書館法 施行에 있어 人員確保에 混亂과 蹉跌이 적지 않을 것이오니 留意하시와 國家的인 浪費를 事前에 防止하도록 措置 있으시기 仰請하나다.

끝.

1964. 6. 17.

韓國圖書館協會 會長 閔泳珪

## 答 辯 事 項

貴下가 建議한 內容에 對하여는 63. 12. 16日字 (大統領 令 162號로 改正 公布된 教育公務員法(1964. 1. 1施行) 別表(1)의 司書 教師欄 第2項의 規定에 依據 既히 施行한 司書教師 養成講習을 履修한 者는 그 履修證 効力이 完了되

지 않는限 本人의 願에 依하여 司書教師資格證을 交付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文敎部長官)

(司書教師資格證 交付申請에 關한 節次는 本報 뉴스專欄을 參照 하시얏)